

## 재정보증서에 대한 중요한 안내

귀하의 재정보증서가 규정대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이민비자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서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보증서 양식인 I-864, I-864A, I-864EZ 그리고 I-864W는 모두 [www.uscis.gov](http://www.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며, 각각의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재정보증인이 국무성 NVC에 재정보증서 및 보충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의 서류들을 면접시에 필요로 합니다.

1. I-864는 작성 및 서명 당시 현재의 일년치 연방 세금신고서 (IRS 1040, 1040A 또는 1040EZ, 또는 IRS 보관용 사본)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재정보증인이 연방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아래 2번을 참조하세요). 귀하의 재정보증인이 이전에 보고한 세금신고서 사본이 없으시면 IRS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재정보증인의 저소득이나 무소득으로 인하여 신고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해의 세금신고에 관한 법조항을 참조하여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나는 학생 또는 가정주부였습니다”라는 진술서로는 수입 증명과 세금신고에 관한 법조항을 제시하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 못미치거나, 또는 저소득 및 무소득의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연대보증인의 I-864와 보충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3. 법규 Section 213A에 의하면 해외에서 거주를 지속해온 초청자는 일반적으로 미국거주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I-864를 제출할 법적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또는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고용 종료 증명, 미국 새직장과의 고용계약 및 첫봉급 명세서, 미국에 새로운 장기임대차 계약, 한국 출입국 증명서, 미국학교 등록증과 같은 서류들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재정보증서에 관해 최근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분은 [www.uscis.gov](http://www.uscis.gov)에 있는 Fact Sheet: Affidavits of Support와 [www.travel.state.gov](http://www.travel.state.gov)에 있는 General Information &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그리고 [www.asktheconsul.org](http://www.asktheconsul.org)에 있는 Affidavits of Suppor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